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338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1. 1. 12. 공포) 및 '22. 1. 13.자 시행으로 주민감사 청구 요건(주민감사 청구 연령 및 청구 주민의 수)이 완화되어 관련 위임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위임 근거규정 변경[조례안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법」 제21조로 변경

나. 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연령 변경[조례안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 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연령을 "19세 이상" 에서 "18세 이상" 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는 2022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감사담당관, 전화 : 02-3396-4403, FAX : 02-3396-9013, e-mail : manxiaolu@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일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조례 위임의 근거 조항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중 조례 위임의 근거 조항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하고, 감사청구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지방자치법」 제21조----------.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는 19세 이상의 주민 100인 이상의 연서로 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18세 이상----------.